



# BACKGROUND

U.S. Embassy, Seoul, Korea

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

Tel: 397-4637; Fax: 790-9268

August 12, 2010

## 미 국토안보부, 관세 및 국경보안청 전자여행허가 신청 비용에 관한 임시 최종규정 발표

워싱턴— 오늘 관세 및 국경보안청(CBP)은 미 국토안보부 (DHS) 규정을 개정한 임시 최종안을 발표했다. 이 임시 최종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8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(VWP)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을 위해 전자여행허가 (ESTA)를 신청할 경우 운영 및 관광진흥비를 지불해야 한다.

관세 및 국경보안청의 전자여행 허가제 지원 및 관리비로 4달러가 부과되며, ‘2009년 미 의회 경찰 행정 기술적 수정법’ 공법 111-145 9조로 제정된 ‘2009년 관광진흥법’에 따라 시행되는 관광진흥비 10달러가 부과된다. 이에 전자여행허가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총 14 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.

전자여행허가 신청시 비용은 <https://esta.cbp.dhs.gov> 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납부해야 한다. 결제 가능한 카드로는 마스터, 비자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디스커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있다. 신청자는 모든 납부내역을 받은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미 국토안보부는 오늘 연방 관보에 임시 최종규정을 공시했으며 10월 8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. 전자여행 허가 신청 비용은 9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과된다.

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이다. 2009년 1월 12일 이후 시행되었다.

전자여행허가는 여행 전 어느 때라도 신청 할 수 있다. 일단 승인되면, 대부분 2년까지 유효하거나, 어느 쪽이 먼저 발생하든, 여권이 만료되는 날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때까지 유효하며, 유효기간 동안 미국 복수입국 신청이 가능하다. 임시 최종규정에 따라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은 여행객은 전자여행허가 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.

하지만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ESTA를 재신청하는 여행객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. USCBP-2010-0025로 구분되는 본 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<http://www.regulations.gov> 에서 연방 규정제정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지시사항에 따라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, 또는 워싱턴 D.C. 20229, 관세 및 국경보안청 (민트 별관), 국제 무역국, 국경보안 규정과로 우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.

비자면제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가 담당하며, 36 개국 지정국가의 국민이 최대 90 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. [http://www.customs.gov/xp/cgov/travel/id\\_visa/business\\_pleasure/vwp/](http://www.customs.gov/xp/cgov/travel/id_visa/business_pleasure/vwp/) 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 [www.cbp.gov/ESTA](http://www.cbp.gov/ESTA) 를 방문하면 전자허가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
###

*관세 및 국경보안청은, 공식 입국항들과 관련한 미국 국경의 관리, 통제 및 보호를 담당하는 미국토안보부내에 있는 통합 국경관리기관이다. 관세 및 국경보안청은 수백개의 미국법을 시행하는 한편 테러리스트들과 테러 무기의 출입 및 반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.*